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1년 5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생활제품안전과 정의식 과장, 김윤근 사무관(509-7246)		

새집증후군 유발 제품을 '안전관리공산품'으로 관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시행규칙 개정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아토피, 비염 등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 유발제품 등 **20개 공산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14품목과** 업체 스스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표시를 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6품목**이다.

○ 추가되는 자율안전확인 14품목은 어린이에게 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함유한 **PVC장판**과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와 VOC를 방출하는 **페인트, 접착제**등 새집증후군 원인 제품을 포함하여, 겨울철 사용시 화상우려가 있는 **온열팩**과 오작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품** 등이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PVC 재질인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흡입하면 생식기의 장애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독물
* **(폼알데하이드)** 방부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피부염, 두통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접착제, 도료의 희석제로 사용되며, 중추신경 장애, 발암성을 가짐

○ 또한 안전·품질표시 6품목은 니켈, 납 등 중금속에 의한 피부발진 우려가 있는 **접촉성 금속장신구**와 어린이들의 목 졸림 사고 우려가 있는 **블라인드** 등 생활밀착형 제품이다.

□ **기술표준원**은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관리 대상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들 제품들은 **KC마크(KC)**를 부착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 품목 지정 및 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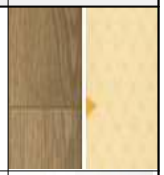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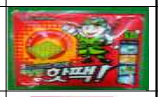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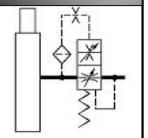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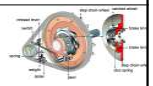
구분	공 산 품 명	비고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	·바닥재·페인트·접착제·온열팩·수유패드 ·와이어로프·권상기·안전극한스위치·스탭 ·유압럽쳐밸브·전자브레이크·역주행방지장치 ·스탭체인·제어반(14품목)	신규지정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	·차광용 블라인드·휴대용경보기·접촉성금속장신구 ·양초·쌍꺼풀테이프·속눈썹열성형기(6품목)	신규지정
	·롤러스케이트(4발)·바퀴운동화 ·모터달린 보드(3품목)	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조정

○ **이번에 마련된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 관련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7월 중에** 확정한 후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고] 1. 신규 지정대상 공산품 현황
2.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3.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현황

참고 1 신규 지정대상 공산품 현황

□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14개 품목)

NO	품목명	용 도	위해·위험	외국의 관리	관리내용	비고
1	실내용 바닥재	PCV 및 나무 재재로서 실내용 바닥재로 사용	PVC장판의 프탈레이트가소제는 생식독성, 나무바닥재는 폼알데하이드, VOC의 피부질환, 두통유발	일본, 독일, 미국등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PVC장판의 프탈레이트가소제, 나무바닥재는 폼알데하이드의 유해물질 관리	
2	접착제	실내용 건축자재의 접착용 제품	폼알데하이드, VOC의 피부질환 및 두통 야기	미국, 캐나다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접착제 함유되는 유해물질 함유량 관리	
3	페인트	실내 벽면 도색	폼알데하이드, VOC등이 피부질환 및 두통 야기	미국, 캐나다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페인트 함유되는 유해물질 함유량 관리	
4	온열팩	신체의 일부를 일정시간 온열효과	고온에 의한 화상 위해 우려	일본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오용하거나 어린이들의 사용으로 고열의 위해관리	
5	수유패드	여성의 모유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패드	패드의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함유	미국, EU 안전인증으로 관리	위해정보 제공 및 유해물질 함유량 관리	
6	와이어로프	승강기의 상하운동의 연결 장치	메인로프 절단으로 인한 승강기 추락으로 사용자 위해	유럽에서 형식승인품목으로 관리	메인로프의 강도 관리	
7	권상기	승강기와 균형추를 연결하여 끌어올리는 장치	라이닝 마모로 인한 불균형 운행으로 안전사고	유럽에서 형식승인품목으로 관리	라이닝 마모상태 및 운행상태관리	
8	안전극한스위치	승강기의 규정된 최상 최하층의 이탈을 방지	운행범위를 이탈함에 따른 추돌사고	유럽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운행범위 이탈방지를 작동상태 관리	
9	유압럽처밸브	유압엘리베이터의 오일 누설로 급하강을 방지	유압누설에 인한 승강기 추락사고	유럽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오일누설 및 일정유압 유지관리	
10	역주행 방지장치	에스컬레이트의 역주행 차단장치	에스컬레이트의 역주행으로 승객 미끄러짐 부상	유럽, 중국은 안전인증으로 관리	역주행 방지 및 차단기 작동상태 관리	
11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트 구동체인	디딤판 체인의 이완에 따른 사고다수	유럽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	디딤판 체인의 이완 및 절단여부 관리	

NO	품목명	용 도	위해·위험	외국의 관리	관리내용	비고
12	스텝	에스컬레이트의 승객 지지 디딤판	스텝과 스텝사이 발 끼임 사고	유럽, 중국은 안전인증으로 관리	스텝과 스텝사이 간격 및 외관의 불균일	
13	전자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의 이상시 급정지 방지	에스컬레이터의 급정지로 인한 승객 넘어짐	유럽, 중국은 안전인증으로 관리	정지 거리시간 간격 및 작동상태 관리	
14	제어반	승강기의 운행 전과정을 제어하는 기능	제어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하강 및 멈춤사고	유럽은 안전인증으로 관리	전기적 환경 및 전자파 제어 등의 관리	

□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6개 품목)

NO	품목명	용도	위해·위험	외국의 관리	관리내용	비고
1	차광용 브라인드	창문의 햇빛을 차단하는 용도	노출된 끈에 의해 아동 목졸림 사고	미국, 유럽은 노출끈 돌출 제한	끈의 이완상태 및 정보제공내용	
2	휴대용 경보기	치한 등으로부터 위급신호를 알림	제품의 오작동으로 소비자 위해우려	일본에서 우수경보기 민간인증으로 관리	작동상태 및 정보제공 내용	
3	접촉성 금속장신구	금속제품의 목걸이, 팔찌, 피어싱 등에 사용	중금속 함유로 인한 피부발진 등의 위해	미국, EU는 접촉금속의 유해물질을 제한	유해중금속 관리	
4	속눈썹 열성형기	소비자 스스로 눈썹열성형기 도구로 사용	제품의 열선 피부접촉, 고온으로 위해	동양의 일부 국가만 사용	열선온도관리 및 취급시 주의 등 정보제공관리	
5	쌍꺼풀 테이프	눈꺼풀에 일시적으로 쌍꺼풀이 생기도록 부착하는 테이프	테이프에 함유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위해	일본, 중국에서 유해물질 제한	유해물질 관리	
6	양 초	야간의 정전이나 전기가 없는 곳에 사용	양초의 심지에 함유된 납의 흡입 위해	미국은 양초의 심지 납함유 관리	유해중금속 관리	

참고 2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 소비자의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으로 차등화 하여 관리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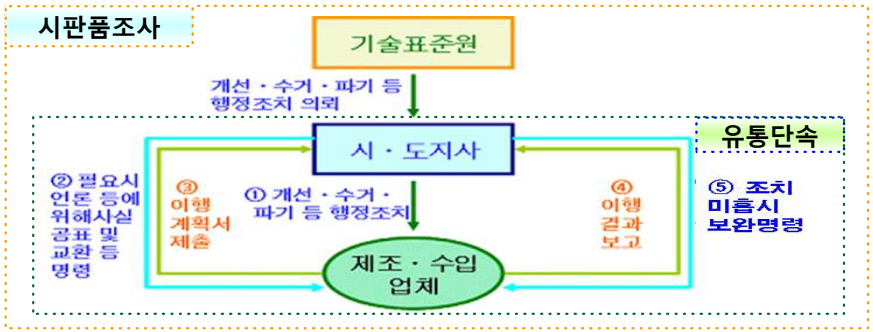
- **(안전인증)**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아 생산단계 부터 관리하기 위해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하는 제도 (비비탄총, 압력솥 등 14품목)
- **(자율안전확인)** 최초 수입·제조 시에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고기관에 **신고 후 판매**하는 제도 (완구, 학용품 등 47품목)
- **(안전·품질표시)** 제조자·수입자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후 판매**토록 하는 제도 (의류, 화장비누 등 30개 품목)

<제도별 사용마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인증번호:)	(신고번호:)	

○ 공산품 사후관리 체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시판품 조사, 교육 및 홍보
- 시·도지사(시·군·구 포함) : 불법 유통제품 단속 및 행정조치



참고 3 안전관리대상공산품 현황(98개 품목, 2011.4월말 현재)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4개 품목 중 어린이용품은 4개 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 유(1)	가(假)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화 학(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기 계(5)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잠금장치
금 속(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생활용품(5)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47개 품목 중 어린이용품은 24개 품목)**

분 야	품 목 명		
섬 유(3)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화 학(8)	건전지(충전지를 포함한다), 부동액, 생활화학가정용품,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유아보호용품		
기 계(2)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잭	토 건 (1)	미끄럼방지타일
생활용품 (33)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바퀴운동화, 벽지 및 종이장판지, 쇼핑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유아용 캐리어, 러.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품,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모터달린 보드, 물휴지(물티슈), 온열시트, 보행기,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도.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30개 품목으로 어린이용품 없음)**

분 야	품 목 명		
섬유제품(2)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양탄자		
화학제품(6)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연질염화비닐호스	토건(1)	물탱크
생활용품(21)	가구, 가정용공구, 간이빨래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보온·보냉용기(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스테인레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7개 품목 모두 어린이용품)**

분 야	품 목 명
화학제품(7)	얼룩제거제, 광택제, 방향제, 부동액, 세정제, 자동차용 세정액, 접착제의 포장용기(* **얼룩제거제를 제외한 6품목은 자율안전확인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중복**)

* **파랑색**은 어린이용품으로 35개 제품